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방안

2023. 9.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1. 추진배경 및 경과

- 「대부업법」 일부 조문은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금융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부행위를 하는 여신금융기관까지도 규율*

* 법정 최고금리, 대부채권 양도제한, 중개수수료율 제한 등

- 이중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는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 금지

* 어음할인·양도담보 및 이에 준하는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 금전의 대부로 포괄적 정의

- 예외적으로 매입추심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캠프코 등 공공기관에만 양도를 허용(⇒외국 금융회사 미포함(양도 금지))

- 산업은행은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국외 신디케이트론 활성화를 위해 ‘외국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의 해외양도 제한’을 해소해 줄 것을 금융위·기재부에 건의(‘22.上)

- 이후 정부는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발표* 및 감독규정 변경예고(‘23.4월)

* ‘22.8월 정부 합동 발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포함

- 규정변경 예고기간中,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이 보유한 외화 법인대출채권의 해외 본사·자회사 양도 등 영업관행도 규제 합리화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확인

- 이에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23.7~9월 3개월간 TF* 운영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관), 기재부, 금감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II. 현 대부업법 조문上 채권 양도 규제

- 대부채권 양수인에 외국 금융회사가 미포함되어, 국내 금융사가 국외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해도 적극적 금융지원 제약

* 인프라사업 등 거액을 조달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채권을 매각(예시: 산은의 美 JFK공항 재개발 사업 금융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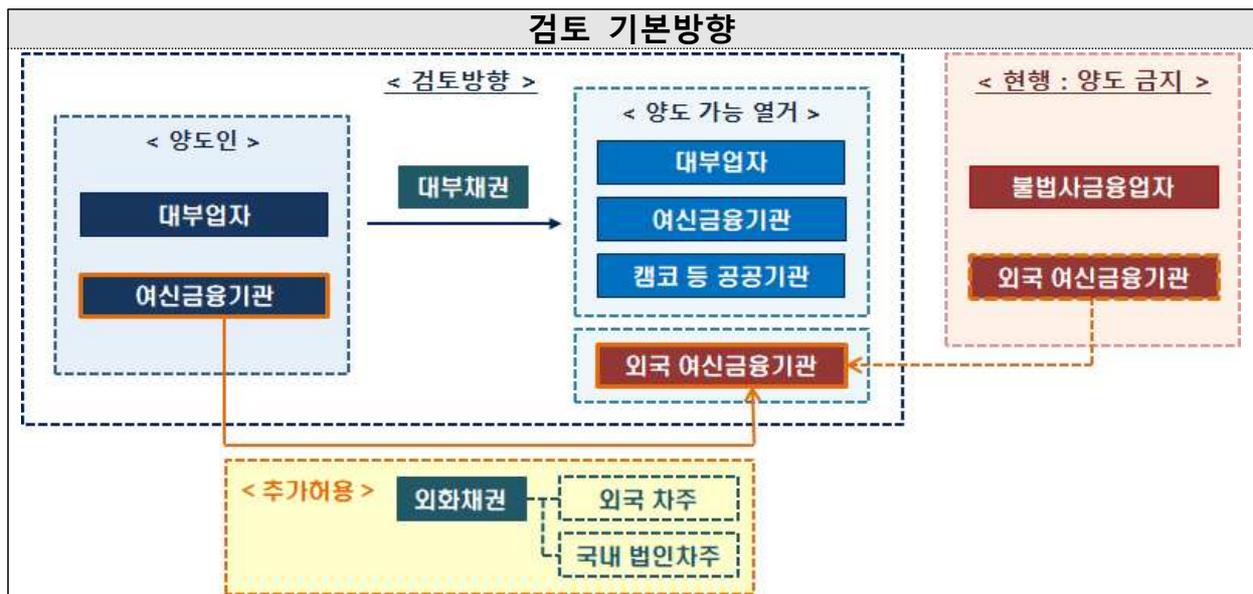
- 또한, 양도 제한 대상인 채권 유형, 차주 유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재하여 모든 대부채권 양도가 제한됨으로써 시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채권 양도도 일괄적으로 금지될 소지

➔ 외국금융회사 등에 대한 대부채권 양도 관행 등을 점검하고 법령 취지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III.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불법사금융업자**로의 채권 양도는 해당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채권 유형·차주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양도 금지 유지
- **외국 금융회사**로의 채권 양도는 허용하되,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에 한해 허용

①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양도는 대부업법 취지** 및 법적용 실효성 등을 고려시 규율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비거주자" 정의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 대부업법 §1조(목적) :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

- 시행령(§2조) 개정을 통해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

* ①역외에서 외국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인프라사업 신디케이션 대출채권

②한국 금융회사 국외 지점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해외 양도 등

②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부 구분(개인/법인차주 및 양도사유)하여 검토 (☞ 2)

2

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해외 양도 허용범위

◇ 기존 거래관행을 폭넓게 인정하되 대부업법 등 조문의 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규제완화 필요성이 크거나 ②이미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거래 중 ③채무자 권익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로 제한

가. 국내 개인 차주 : 양도 금지 유지

□ **국내 개인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은 개인정보 국외유출 문제, 비대면 채권추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으로의 채권양도를 제한

나. 국내 법인 차주 : 특정 양도 사유에 한해 허용

□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의 경우 전면 허용으로 전환할 경우의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

○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거래 중 해외 양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모니터링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의 해외 양도 허용사유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대출채권을 수출자로부터 소구방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한정(판례에 따르면 비소구방식으로 매입한 채권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이 아님)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은 ①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 ②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할 것을 약속(양도하는 여신금융기관이 서면 약속서 징구)

※ 추후 위 사유 이외에 해외 양도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허용사유에 포함하여 재개정 검토

다. 양수자인 외국금융회사 범위 : 외국 여신금융기관

□ 외화채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범위를 제한

- 채권추심 또는 신용정보보호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수인으로 범위 한정(외국금융회사 → 외국 여신금융기관)
 - 외국 여신금융기관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SPC*에게만 양도 허용(대부업자 및 비등록SPC 제외)

*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거쳐 설립·운영하는 SPC

IV. 기대효과

1]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

- 역외 대부행위는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위법소지를 해소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내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지원

- 국내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를 상대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회사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부실우려 채권을 해외로 매각하는 등 여신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

3] 국내 수출입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국내 여신금융기관·외은지점이 외화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법인 차주에 대한 신디케이션 또는 무역금융 방식*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

* 외은지점의 외화표시 대출채권 해외 매각 실적 중 국내 수출입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채권이 대부분을 차지

4] 국내 영업 중인 외은지점의 영업행위에 대한 법규상 모호성 해소

- 외은지점 등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본점·지점 등으로의 채권 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원활한 지점 폐쇄·청산을 지원
- 현행 대부업법 문리해석상 금지되고 있는 외은지점의 영업행위를 법령의 틀 안으로 포섭

V. 향후 계획

-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9.19일~10.30일(40일)) → 금융위 의결 →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시행*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재가 이후 공포 시점에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비영리법인이 정관 목적 범위내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 및 법인)에게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6.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①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상품(수출 팩토링/포페이팅,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개설 등)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해당 지점의 폐쇄·청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인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대출채권을 양수한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채권추심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재양도시 양수인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대부계약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면을 징구하여야 한다.
- ③ 시행령 제6조의4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기간산업안정기금, '20.10월)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새출발기금, '22.9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② (생략)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률 (☞ 위임조문 없음)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4 제2항 제2호의 회사등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